

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

무주택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사업개요

■ 장기안심주택이란?

전세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의 30%(4천 5백만원 한도)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여, 최대 6년까지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■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

○ 사업지역 : 서울특별시

○ 공급호수 : 970호

☞ 공급호수는 평균 지원금을 기준하여 추정한 호수로 추후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

○ 대상주택 : 전용면적 60㎡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 단, 4인 이상 가구 전용 85㎡ 이하 주택 가능하며, 5인 이상 가구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까지 가능

○ 지원내용

- 전세보증금 지원 : 보증금의 30% 금액(최대 4천5백만원) 무이자 지원. 다만, 1억원 미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0% 금액(최대 3천만원) 무이자 지원
- 보증금 인상분 지원 : 직전 보증금의 5% 초과 10%까지 무이자 지원

○ 지원기간 :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가능

- 재계약 요건 :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

○ 공급 유형 및 공급 호수

- 일반공급 : 전체 공급호수의 70%
- 우선공급 : 전체 공급호수의 30%(신혼부부 20%, 다자녀가구 10%)

110331389146676

입주자 신청자격

■ 신청자격 : 입주자 모집공고일(2014. 1. 8)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

① 월평균소득이 '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인 자 :
월평균 소득은 신청자와 부양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함.

가구원수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이상 가구
월평균소득70% ('12년 기준)	1,364,143원	2,327,367원	3,129,256원	3,512,464원	3,688,053원

-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, 배우자,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(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,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)의 합이며, 이 경우 태아(수)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.
-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아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임
 - ☞ 위 가구원(세대원)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
- 일반근로자(비정규직 및 일용직근로자포함) : '12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.
 - '12년도 이직자(신규 취업자)는 현 직장에서 '12년도에 받은 급여를 '12년도에 정상적으로 ¹¹⁰³³¹³⁸⁹¹⁴⁶⁶⁷⁶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.
 - '13.1.1이후 이직자(신규취업자)는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2013.1.1 이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.
 - '12년도 일부기간 휴직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중 소득을 정상적인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, 2012.1.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휴직한 경우에는 동일직장내 동일 직급/호봉인 자의 소득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추정하여 산정
 - ☞ '12년도 전체 휴직 후 '13년도 복직한 경우 복직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의 소득기준으로 산정.

- 회사의 분할, 합병 등으로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두 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임을 확인하여 동일한 직장인 경우 '12년도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(다만, 두 회사가 다른 사업장인 경우 <계열사간 인사이동 등>에는 이직자 또는 신규취업자로 소득산정).
- 사업자 : '12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'12년도 개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.
 - ☞ '13.1.1이후 신규사업자 :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소득산정(미신고자는 가입 후 관련 자료제출).
-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: '12년도 종합소득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과 '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로소득공제액(22번)을 합하여 소득을 산정.
- 무직자: '12년도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총 소득금액을 '12.1.1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.
 - ☞ '12년도 이후 계속 사업자(또는 근로자)가 '12년도 신규취업(또는 개업)한 경우 각각의 월평균소득 산정 후 합산
 - ☞ 근무개월 수가 1개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며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함.
 - ☞ 사업소득이 손실(-)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산정.

② 부동산 기준(토지·건물) : 12,600만원 이하

-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(세대주 및 부양가족)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
- 토지가액은 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 수원·목장·용지·임야·광천지·염전·대(埜)·공장·용지·주차장·주유소·용지·창고·용지·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
 1. 「농지법」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·군·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
 2.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
 3.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, 처분 등이

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.

-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.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(건물 및 토지가액) 포함.

③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: 2,464만원 이하

-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(차량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%씩 감가상각하여 산정)
- 자동차는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. 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)
-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

④ 정부(또는 서울시)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자격 제한 : 공공임대주택 입주자,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,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리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됨. 단, 장기안심주택 계약 전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(상환이행 각서 제출)시 지원 가능

■ 우선공급 신청자격 : 신혼부부 20%, 다자녀가구 10%

110331389146676

- ▶ 신청자격 :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우선공급 신청자격 중 하나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
- ☞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,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.

① 신혼부부 가구

- 신청자격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)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(종합)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
- ☞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(재혼 포함), 소득 심사시 임신

중인 자녀 수는 세대원에 포함.

- ☞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(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)로 판단하며,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적용
- ☞ 임신 중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(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)로 신청자격 여부 확인(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 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)
- ☞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입양 포함)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

- 입주자 선정순위

- 1순위 :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,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
- 2순위 :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,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

② 다자녀가구

- 신청 자격 : 민법상 미성년(만 19세 미만)자인 3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하되 태아 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)가 있는 자

■ 신청자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

- ▶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가점기준에 따라 선정

항 목	3점	2점	1점
① 세대주 나이 (만 연령 기준) <small>110331389146576</small>	50세 이상	40세 이상	30세 이상
② 부양가족 수 (태아 포함, 신청자 제외)	3인 이상	2인	1인
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(만 19세 이후)	5년 이상	3년 이상	1년 이상
④ 미성년 자녀 수 (만 19세 미만)	3자녀 이상	2자녀 이상	-
⑤ 청약저축(청약종합저축) 납입 횟수	24회 이상	12회 이상	1회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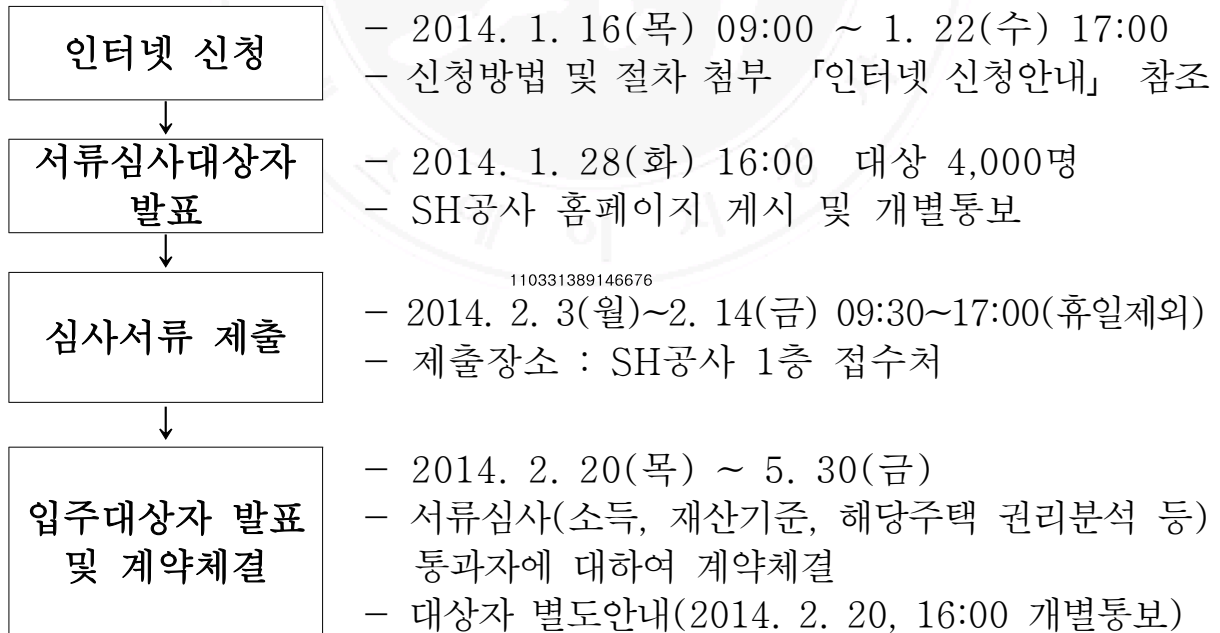
⑥ 사회취약계층(1개 항목만 인정)

- 가)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,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: 3점
- 나) 「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」에 의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: 3점
- 다)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% 이하 : 2점
 ['12년 기준 50% 이하 : 1인 974,388원, 2인 1,662,405원, 3인 2,253,183원, 4인 2,508,902원, 5인 이상 2,634,323원]

- ☞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,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입일, 부양가족 수, 세대주 연장자순으로 입주자 선정
- ☞ 부양가족 수(신청자 제외)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직계존속 및 태아 포함)과 배우자를 말함
 - ※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며 이(재)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(현 배우자 포함)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
- ☞ 서울시 거주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(서울특별시 최종전입일부터 기산)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, 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.
- ☞ 가점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. 단, 차상위계층 장애(아동)수당의 경우는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정.

입주자 선정절차

입주자 선정절차



▶ 인터넷 신청안내

- SH공사 홈페이지(<http://www.i-sh.co.kr>) 인터넷 신청
- 인터넷 신청기간 : 2014. 1.16(목) 09:00 ~ 1.22(수) 17:00
 [신청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, 단 신청마감일인 1.22(수)은 17:00까지]

☞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시민에 한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(대행)하실 수 있습니다.(휴일 및 근무시간외 대행신청 불가) 대행신청의 경우 기재내용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• 인터넷 신청방법 안내

"인터넷 신청, 10분에 OK!", "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신청(마감시간내)"

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신청(대행)은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착오신청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인터넷 신청

- 신청순서 : SH공사 홈페이지(<http://www.i-sh.co.kr>)에 접속 → 로그인(회원가입) 후 → 장기안심주택 신청 배너 클릭 → 인터넷 신청
- 공인인증서는 은행 또는, 5대 인증기관(금융결제원, 코스콤, 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인터넷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사항 : 홈페이지 회원가입, 공인인증서 발급/소지
공공아이핀(I-PIN) 발급

○ 신청시간

인터넷 신청시간은 기간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(저장기준)하여야 합니다.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되지 않을 수 있으니,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신청기간내에는 ¹⁰³³¹³⁸⁹¹⁴⁶⁶⁷⁶신청취소 후 재신청의 방법으로 수정 가능)

※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

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 대상자가 선정되며,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(무주택 및 소득 등의 자격요건, 주민등록번호, 부양 가족수, 서울시 거주기간, 자녀수, 우선공급자격여부 등),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: 2014. 1.28(화) 16:00

- 대상자 발표 : SH공사 홈페이지 (<http://www.i-sh.co.kr>)

- 대상자 : 4,000명

☞ 서류심사대상자로 발표된 4,000명은 인터넷 신청 기재내용을 근거로 선정한 것으로 최종 입주대상자는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서류심사 결과 소득, 자산 등 신청자격과 가점항목에 부적격(또는 기재오류 등) 사실이 있을 경우 최종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.

▶ 서류심사 안내

- 심사서류 제출 기간 : 2014. 2. 3(월) ~ 2.14(금) 09:30~17:00(휴일 제외)

※ 서류심사와 관련한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개별통보 예정입니다

[제출서류 안내] --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.

- ①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(과거 5년이상 내역 포함) 각 1부
-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)
- ③ 임신진단서 1부 :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분에 한함.
☞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(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)
- ④ 혼인관계증명서 : 신혼부부 공급대상자에 한함
- ⑤ 통장원본지참(통장정리후, 통장최종납입횟수 표기, 월1회 인정)
110331389146876
-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'12. 1. 1 ~ 공고일 현재까지 내역 포함, 직장지역포함) : 만19세이상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(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, 학생, 노인 등 포함) ⇒ 국민건강보험공단 : 전화신청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(☎1577-1000, <http://www.nhic.or.kr>)
☞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, 의료급여증명서 제출
☞ 군입대자는 병적증명서 제출(동 주민센터에서 발급)

⑦ 소득입증서류 :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

해 당 자 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- '12년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	- 세무서
	'13년신규취업 자또는이직자	- 월별 급여명세서(직인 날인) -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	-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- 수급자 증명서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	- 주민센터
자영 업자	일반자영업자	- '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'12년도에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증명서 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인 경우)	- 세무서
	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 할수 없는자	- 국민연금 산정 전용 가입내역확인서/사업자등록증 사본 (사업자인 경우) - 국민연금 소득미신고(미납)된 경우 소득신고 후 해당 확인서	- 국민연금 관리공단 - 세무서
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인 경우		- '12년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 - 사업자등록증 사본 - '1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	- 세무서 - 해당직장
비정규직근로자, 일용직근로자		- '12년 소득금액증명원	- 세무서
무직자 (공고일 현재 직업이 없는 배우자, 학생, 노인 등 포함)		- '12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신고사실이 없음을 확 인하는 사실증명서. 단, 2013년도에 재직한 기록이 있을 경우 위 서류 외에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, 월별급여명세 표(직인날인) 추가제출	- 세무서 - 해당직장

- ☞ 소득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.
- ☞ 세무서 발급서류는 국세청 홈택스(<http://www.hometax.go.kr>) 발급 가능

⑧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(대상자에 한함)

가 점 대 상 자	제 출 서 류	발 급 처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	- 수급자증명서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	- 주민센터
보호대상 한부모가족	- 한부모가족증명서,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	- 주민센터
국가유공자 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평가액 이하인 자	-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(생활등급 6~12등급)	- 지방보훈청
5.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	- 5.18민주 유공자 증명원	- 지방보훈청
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	- 특수임무수행자 증명원	- 지방보훈청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- 해당구청
일본군위안부 피해자	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	- 여성가족부

장애인	장애인증명서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	- 해당기관 - 해당구청
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	추천서(자치구확인),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	- 아동복지 시설의 장 - 해당구청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	-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[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] 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	- 해당기관
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통장가입자	통장원본지참(통장정리후) (통장최종납입횟수 표기, 월1회 인정)	- 해당은행

입주대상자 계약체결 및 지원

▣ 장기안심주택 공동임대차 계약체결 및 지원

▶ 계약절차



▶ 계약기한 : 2014. 5.30(금)까지 (약 3개월)

☞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안심주택 전세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▶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및 기타 안내사항 :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드립니다.

▶ 기타 계약시 유의사항

- 장기안심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입주주택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받는 임대주택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보해드립니다.
-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주택 소유 여부 및 자산 보유기준에 따

른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, 이는 장기안심주택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되오니 지원 신청 및 임대차 계약체결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-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이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주소 및 연락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통보 바랍니다. (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지원자격 등이 취소 될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
- 장기안심주택 지원은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주택에 한합니다.

***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가입 제외주택**

1.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·가압류·가등기 및 소유권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·예고등기 등이 있는 주택(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모두를 갖춘 날 기준)
2.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. 다만,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(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)와 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
3. 보험에 가입하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주택의 가격에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%(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30%)를 초과하는 주택
4.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인 경우
5.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의 임대차계약인 경우
6. 임차주택이 재개발,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에 의거 철거 예정지인 경우
7.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(임대사업자)인 경우 또는 법인인 경우
8. 주택에 대한 부채(채권최고액, 임차보증금 등 합계)비율이 90% 초과하는 경우

110331389146676

▶ 기타 입주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계약무효되는 경우

- 인터넷 신청시 기재내용 또는 입주대상자 심사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 사실과 다르거나,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- 서울시 또는 정부로부터 주거지원대책(공공임대 입주, 전세자금 지원 등) 수혜를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전까지 퇴거, 미상환 또는 지원포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
- SH공사에서 안내된 임대차 계약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
-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

■ SH공사 문의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, (지하철 3호선 8번 출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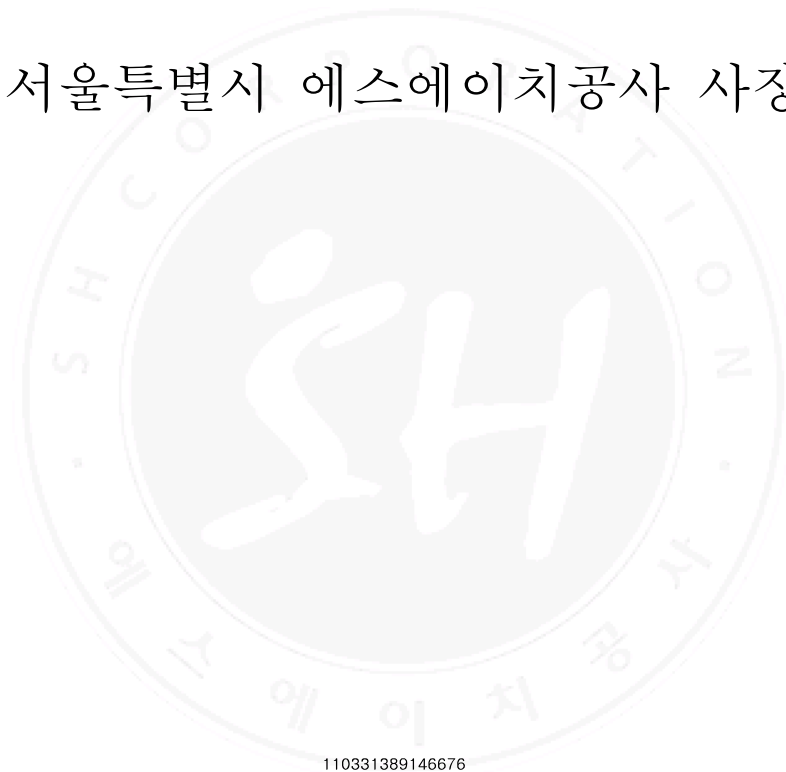
SH공사 전세지원TF팀 (1층)

○ 대표전화 : 1600-3456(시프트콜센터)

3410-8543~8544 , 8591~8592

2014. 1. 8.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



110331389146676